

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신청 안내

부산지방고용노동청	
담당자	조진완 (051-850-6470)
FAX	(051-851-74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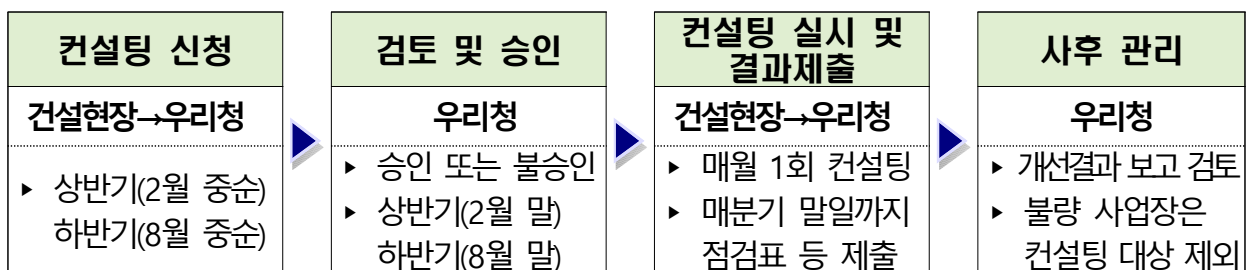
① 제도 개요

-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(120억원 이상)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
- * 단,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, 불량통보·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
- 반기(末)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(건설현장→지방관서 신청)
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(2인1조)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

<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>

-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·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 -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·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 - 3000억 이상 : 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- ※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

②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절차



※ 자율안전관리 승인 현장은 '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감독' 유예

③ 신청 대상

-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12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
- '23년(발생일기준)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

- '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,
- '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(사고사망만인율)이 평균 0.5배 이하인 업체[첨부1]
- * 단,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
- ** 공동수급(권소사업) 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

4 진행 방법

- 우리 청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
-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(컨설팅) 실시
- 매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컨설팅 점검표 및 개선결과 보고서 제출
-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,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
- 위험공정, 위험작업시기 도래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지도·점검 실시
 - 점검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하고 감독 실시
- 중대재해(1건)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컨설팅 승인을 취소

5 세부 일정

- '24. 8. 20.(화)까지 건설산재지도과로 계획서* 포함한 신청서 제출[첨부2]
 - * 계획서는 공사기간 내 작업 위험도, 현장의 개선노력 등이 반영되도록 작성
 - 『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』를 통해 심사 후 승인(일정 추후 통보)
- '24. 8월 말 승인 여부를 각 현장으로 회신

부산지방고용노동청